

석면비산측정결과보고서

공사명: 군청사 천정 텍스 철거공사

2019. 12



(주) 새 날 환경 안전 연구원

SaeNal Environment Safety Institute

석면해체·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

접수번호		접수일		
제출인	상호(대표자) (주)용인테리어		사업자등록번호	
	주소: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내평길 33 (31-번지)			
건축물	건물명: 군청		위치:전라남도 화순군 동현길 23(화순읍 훈리, 화순군청)	
	연면적(㎡) -㎡		작업기간:2019.11.29.- 2019.12.17	
	석면건축자재 [길이(m) · 면적(㎡) · 부피(㎡)] 천장재(텍스) 1,221.22㎡			
측정기관	대표자 (주)새날환경안전연구원		사업자등록번호	
	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본촌택지로 29번길 15			
측정 일시	2019.11.30 - 2019.12.01			
측정 결과	시료번호	측정 지점	측정 결과(f/cc)	검출 석면
	붙임 1 참조			
측정 지점 위치				
붙임 2,3 참조				
「석면안전관리법」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·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를 제출합니다.				
2019 년 12 월 일				
제출인		(주)용인테리어 (서명 )		
화순군수	귀하			
첨부서류	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석면해체·제거작업 신고서 사본			수수료 없 음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				

[붙임1] 석면비산 측정결과

공기중시료 분석결과서
Asbestos & other fibers by PCM

▣ 측정일자: 2019.11.30.

no	측정항목	시료 번호	측정지점	측정결과 (기준:0.01(개)f/cc)	검출 석면
1	비산석면	#1	부지경계선1	검출한계이하(0.002f/cc)	미만
		#2	부지경계선2	검출한계이하(0.002f/cc)	미만
		#3	부지경계선3	검출한계이하(0.002f/cc)	미만
		#4	부지경계선4	검출한계이하(0.002f/cc)	미만
		#5	작업장주변	검출한계이하(0.005f/cc)	미만
		#6	작업장주변	검출한계이하(0.005f/cc)	미만
		#7	위생설비 입구	검출한계이하(0.005f/cc)	미만
		#8	음압기공기배출구	검출한계이하(0.005f/cc)	미만
		#9	음압기공기배출구	검출한계이하(0.005f/cc)	미만
		#10	음압기공기배출구	검출한계이하(0.005f/cc)	미만
		#11	폐기물 반출구	검출한계이하(0.005f/cc)	미만
		#12	위생설비 입구	검출한계이하(0.005f/cc)	미만
		#13	음압기공기배출구	검출한계이하(0.005f/cc)	미만
		#14	음압기공기배출구	검출한계이하(0.005f/cc)	미만
		#15	폐기물 반출구	검출한계이하(0.005f/cc)	미만
		#B1		0.000	
		#B2		0.000	

검출한계 = $(120,000 / (V \times N)) \times 0.005$, 0.002~0.005개(f/cc)

N = 계수 시야 수, V = 총 포집유량(L)

- 각 측정지점은 1차 작업구역 및 작업여건과 풍향, 주변유동인구를 고려하여 측정위치 선정함

[붙임1] 석면비산 측정결과

공기중시료 분석결과서
Asbestos & other fibers by PCM

▣ 측정일자: 2019.12.01.

no	측정항목	시료 번호	측정지점	측정결과 (기준:0.01(개)f/cc)	검출 석면
1	비산석면	-	폐기물 보관지점	-	-
		#B1		-	

-우천으로 인하여 폐기물 보관지점 시료채취하지않음

[붙임2] 석면비산 정지점 위치(도식도)



제2018-125001호

식면조사기관 지정서(변경)

지 원 명 (주)세일원 건강관리연구원

소재지 (61020) 광주광역시 북구 문촌테크로29번길 19 2층 201호(1)

대표자성명 최진영

총 대행(지정) 사업장(0)개소, 근로자(0)명
인 계

관 할 지 역
지정사항 대행(지정) 사업장(0)개소, 근로자(0)명
인 계

대행(지정)
지역

※ 준수사항

1. 식면조사기관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 상의 자료제출요구 및
질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2. 식면조사기관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
준수하여야 한다.

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38조의2 규정의 의하에 식면조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2018. 3. 5

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



(주) 새 날 환 경 안 전 연 구 원

광주광역시 북구 본촌택지로 29번길 15

고용노동부지정석면조사 제2018-120001호

대표전화 : 062-571-3585

팩 스 : 062-572-3585

이 메 일 : toskf2470@hanmail.net